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 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2000. 8. 28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2000년 8월 10일 제출
- 회 부 : 2000년 8월 11일

3.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16호) 및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2000. 2. 28. 대통령령 16,731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16호) 및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2000. 2. 28. 대통령령 16,731호)됨에 따라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5. 검토의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16호) 및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2000. 2. 28. 대통령령 16,731호)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존치근거가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